



외국인과 세금

외국인이라도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국내에서 일을 하여 발생한 수입이 있는 사람
→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월 1 일 현재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
→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에 따라 과세됩니다).
- 또한 외국인이라도 여행 등으로 호텔에 머물거나 식사를 하면 소비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 포인트:

‘국세’와 ‘지방세’

일본의 세금은 어디에 납부하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국세’라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소득세’가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에 납부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주민세’가 있습니다.

1 소득세

소득세는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1 년간에 발생한 개인 소득에 관련된 세금입니다.

소득세 산출은

- ① 수입 - 경비 등 = 소득금액(A)
 - ② 소득금액(A) - 각종 공제(1-3 참조) = 과세소득금액(B)
 - ③ 과세소득금액(B) × 세율
- 로 계산됩니다.

세율은 과세소득금액(B)가 많아질수록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1-1 납세의무자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

다음의 거주 형태 구분에 따라 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가 달라집니다.

(1) 거주자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현재까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소'를 둔 사람((2)비영주자는 제외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이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원 포인트:

'주소'와 '거소'

- '주소'란 개인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하며 생활의 근거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일본에서 취업중인지, 배우자나 그 외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일본에 살고 있는지 등)에 따라 판정합니다.
- '거소'란 사람이 상당 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장소이지만 생활의 근거라고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장소를 말합니다.

(2) 비영주자

'거주자' 중 일본 국적이 없고 또한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었던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사람

해당되는 사람을 '비영주자'라고 합니다.

→ ①국외원천소득 외의 소득과 ②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지급된 것 또는 국외에서 송금된 것이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3) 비거주자

'거주자'와 '비영주자' 이외(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 등)의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 일본 국내에서 근무한 급여나 일본 국내에서의 인적 서비스 제공으로 생긴 보수 등의 국내 원천소득만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1-2 소득세 확정신고와 납세

소득세는 그 해에 발생한 소득 금액과 그에 따른 소득세액을 본인이 계산하여 신고기간 내에 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1-4 참조)된 소득세 등과의 과부족을 정산합니다. 이 수속을 '확정신고' 라고 합니다.

(1) 확정신고가 필요한 사람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소득세가 원천징수(1-4 참조)된 후 연말정산(1-4 참조)에 의해 정산되므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급여를 1 곳에서 받으며 급여소득이나 퇴직소득 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 만원을 넘는 사람
- 2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급여의 수입금액과 급여소득이나 퇴직소득 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 만원을 넘는 사람
- 급여 외의 사업이나 주식거래 등에 의해 소득을 취하여 소득세 계산 결과 세금이 발생하는 사람 등

또한, 확정신고에 의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납세자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세무서에서 납부에 관한 통지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납부방법입니다.

납부 방법	개요
입금 납세	사전 신고한 예금 계좌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날짜에 자동으로 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는 방법
직접 납부 (e-Tax 를 통한 계좌 이체)	e-Tax 를 이용하여 사전에 신고한 예금 계좌에서, 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
인터넷 뱅킹등을 통한 전자 납세	인터넷 뱅킹이나 ATM 에서 납부하는 방법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 '국세 신용카드 납부 사이트' 를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스마트폰 앱을 통한 납부	전용 사이트 '국세스마트폰결제전용사이트' 를 통해 'OOPay' 와 같은 스마트폰 결제 앱을 사용하여 납부
편의점 납부 (QR 코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납부 정보 QR 코드를 생성하여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편의점 납부 (바코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바코드 부착 납부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창구납부	금융 기관이나 세무서 창구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납부하는 방법

(2) 확정신고를 하면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람

- 소득공제(1-3 참조)가 있는 등의 이유로 원천징수(1-4 참조)된 소득세 등이 초과 납부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의해 소득세가 환급됩니다. 우체국이나 은행계좌로의 송금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등에 의해 초과 납부된 소득세가 없다면 환급되는 소득세는 없습니다.

(3) 확정신고 및 납세 기한

각 연도분의 소득세에 관한 확정신고의 상담 및 신고서 접수기간은 다음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 세무서의 휴무일(토요일, 일요일, 경축일 등)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의 상담 및 신고서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분의 납세 기한은 3월 15일입니다.

※ 이 기간(3월 15일)이 토요일, 일요일, 경축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일 이후의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4) 일본에서 출국하는 경우

- 일본에 주소 및 거소가 소멸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국 전에 그 해의 급여에 대해 연말 정산을 받습니다.
- (1)과 같이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국 전에 확정신고 및 납세를 해야 합니다.
- 출국한 후에 확정신고나 납세 등의 수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납세 관리인을 세워 '납세관리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십시오. 출국 후에 납세 관리인이 본인 대리인으로 수속을 하게 됩니다.

1-3 주된 소득공제

각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1의 계산식을 참조).

단, 비거주자(1-1 (3) 참조)는 적용되는 공제 종류가 한정됩니다.

(1) 친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친족을 부양하는 경우로 부양되는 사람의 합계 소득금액이 40 만엔 이하 (2019년 이전은 38 만엔 이하) 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하고 있는 친족이 비거주자(1-1 (3) 참조)인 경우에는 '친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 사본 등) 및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금융기관에서 송금한 송금내역서와 같은 서류)'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하거나 확정신고서 제출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3년 이후는, 부양하고 있는 친족이 연령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비거주자인 경우로 이하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① 그 친족이 유학에 의해 일본에 주소 및 거소가 없어진 친족이다.
- ② 그 친족이 장애인이다.
- ③ 그 해에 있어서 자신이 그 친족에게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한 38 만엔 이상 지출을 하고 있다.

(2)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비거주자(1-1 (3) 참조)인 경우에는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 사본 등) 및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금융기관에서 송금한 송금내역서와 같은 서류 등)’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하거나 확정신고서 제출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이나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 또는 그 외 친족의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후생연금 등)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생명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본인이 일정 금액의 생명보험료, 간호의료보험료 및 개인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본인이나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 또는 그 외 친족의 의료비가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의료비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 급여를 받고 있는 외국인은 고용주에게서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가 공제(원천징수)됩니다.
- 그 해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가 정산(연말정산)됩니다.
- 급여 지급자는 지급금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표’를 급여수여자에게 발급합니다.

1-5 조세조약에 따른 특례

출신국과 일본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일정 요건을 갖추 경우 소득세가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주민세



2-1

주민세란

- 1월 1일 현재 주소가 있는(있었던) 도도부현과 시구정촌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지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에서 받은 급여 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는 '소득할'과 받은 급여 등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납부하는 '균등할'이 있습니다.
- 도도부현에 납부하는 주민세는 시구정촌에 납부하는 주민세와 함께 시구정촌에서 납부합니다.

2-2

주민세의 납부

- 주민세 납부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특별징수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고 시구정촌에 납부합니다.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시구정촌에 주민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보통징수

시구정촌에서 '주민세를 납부하십시오'라는 서면이 오면 본인이 이 서면과 서면에 쓰여진 세액분의 금액을 가지고 시구정촌(※)에 가서 납부합니다.

(※)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시구정촌에서 우송된 서면에 적혀 있습니다.

2-3

기타

- 주민세에 관한 유의점

- ① 1월 1일 현재 주소를 두고 있는(있었던) 시구정촌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1월 2일 이후 일본에서 출국한 경우에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② 특별징수(2-2 ① 참조)로 주민세를 납부해 온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주민세를 보통징수(2-2 ② 참조)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미납분의 주민세 전액을 지급될 예정인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시구정촌에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③ 일본을 출국할 때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출국 전에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세금 수속을 진행해 줄 대리인(납세 관리인)을 세워 관할 시구정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

소비세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비세 10 퍼센트가 부가되지만, 주류와 외식을 제외한 식료품을 구입했을 때의 세율은 경감세율 8 퍼센트가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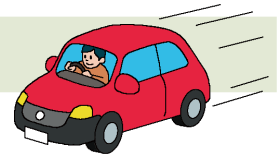


4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

4-1

자동차세/경자동차세



(1) 자동차세/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

자동차나 경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나 경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자동차세/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을 납부합니다.
(환경성능할의 세율은 자동차 및 경자동차의 연비성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자동차세/경자동차세종별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4 월 1 일 현재 자동차(배기량이 660cc를 넘는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세종별할을 납부합니다(※).

(세액은 배기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납부금액이나 납부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도도부현에서 송부되는 서면에 적혀 있습니다.

경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4 월 1 일 현재 경자동차(배기량이 660cc 이하인 차)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경자동차세종별할을 납부합니다(※).

(세액은 배기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납부금액이나 납부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시구정촌에서 송부되는 서면에 적혀 있습니다.

4-2

자동차 중량세

자동차나 경자동차의 차량검사 등을 받을 때

차량검사 등을 받을 때 자동차나 경자동차의 중량 등에 따라 자동차 중량세를 납부합니다.

5 고정자산세

- 1월 1일 현재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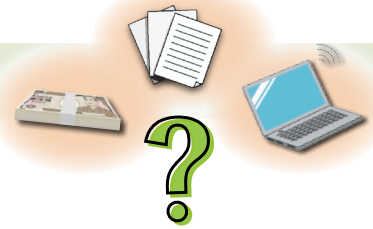
①토지 ②가옥 ③상각자산

- 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세액은 자산의 가격을 토대로 시구정촌이 산출합니다.
- 세금은 자산 소재지의 시구정촌에 납세합니다.

6 세금에 관한 문의처

6-1 국세에 관한 문의

국세에 관한 문의는 다음을 이용해 주십시오.



(1) 전화상담센터

국세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에 관해서는 다음의 '전화상담센터'에서 영어 상담을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 도쿄국세국 전화상담센터	03-3821-9070
· 오사카국세국 전화상담센터	06-4965-8298
· 나고야국세국 전화상담센터	052-971-2059

(2) 택스앤서(tax answer)(자주 있는 세금에 대한 질문)

자주 있는 세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인 답변을 세금의 종류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ta.go.jp/english/taxes/index.htm>



(3) 국세청 홈페이지의 안내

국세에 관한 신고, 납세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www.nta.go.jp/english/index.htm>



National Tax Agency JAPAN

検索



6-2

지방세에 관한 문의

국세에 관한 문의는 다음을 이용해 주십시오.

① 총무성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

외국인의 개인주민세에 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individual-inhabitant-tax.html



②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는 각 도도부현이나 각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